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2025학년도 **수시**

# 신입생 모집요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 차 례

1. 전형일정 .....	6
2.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	6
3.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수능최저학력기준 .....	7
4.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	16
5.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20
6. 성적산출 방법 .....	21
7.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전형방법 및 반영비율 .....	22
8. 선발방법 .....	26
9. 해사대학 선원건강검진 .....	27
10. 피복측정 .....	27
11. 등록금 납부 .....	28
12.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	28

# 입학원서 접수

## 01-입학원서 접수 기간

○ 2024. 9. 9.(월) 9:00 ~ 9. 13.(금) 18:00

## 02-입학원서 접수 사이트

○ <http://www.jinhakapply.com> (주)진학어플라이

## 03-전형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가. 제출 기간: 2024. 9. 9.(월) 09:00 ~ 10. 21.(월) 18:00

나. 제출 방법: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

※우편으로 발송한 전형서류가 마감 시간이 지나 도착할 경우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

다. 제출할 곳

**(우) 58628**

**전남 목포시 해양대로 9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학생처 입학팀**

라. 전형서류 도착 여부는 입학원서 제출 사이트에서 확인

## 04-전형료(인터넷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가. 금액: [해사대학 38,000원], [해양공과대학, 해양산업융합학과,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36,000원]

나.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전형: 5,000원

(면제·감면 금액: [해사대학 33,000원], [해양공과대학, 해양산업융합학과,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31,000원])

다. 결제 중 창 단기를 하거나 시스템이 종료되는 경우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라.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가 접수되지 않음

마.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원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복수지원 허용 예시 1

<b>모집 단위</b>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기판시스템공학부	해군사관학부	조선해양공학과	해양건설공학과
<b>전형 유형</b>	학생부성적 우수자	누구나	지역인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 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b>전형유형에 해당될 경우 각기 다른 모집단위에 최대 6회 복수 지원 가능</b>						

### 복수지원 허용 예시 2

<b>모집 단위</b>	해양경찰학부					
<b>전형 유형</b>	학생부성적 우수자	누구나	지역인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 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b>전형유형에 해당될 경우 같은 학부 모집단위에 최대 6회 복수 지원 가능</b>						

복수지원 불가 예시

모집단위	항해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성적우수자	학생부성적우수자
동일 전형 유형으로 복수 모집단위는 지원 불가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지원자격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면접 고사료에 해당하는 금액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직접 방문수령과 수험생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하나를 수험생이 선택한다.
- 수험생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지원자 유의사항

1. 전형유형을 달리하는 복수 지원은 가능하나, 하나의 전형 유형으로는 반드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전 모집단위 문과, 이과 통합전형
2.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③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한다.

4. 제2항의 사유로 우리 대학 또는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5.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다.
6.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산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입학원서의 수험생 인적 사항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특히 주민등록번호, 성명<예 : 류-유, 렬-열, 량-양, 룰-울>)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이다.
7.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입학원서 제출을 취소하거나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을 수정할 수 없다.
8.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9.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10. 총원 합격자 명단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는다.
11. 이 모집요강이 변경되거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통지하지 않고,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니 지원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우리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생부 자료, 수능 성적
  - 학교정보: 최종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고교 FAX번호 등
  - 기타: 추가 연락처 등
- 수험생의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및 통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 합격자(등록자)의 개인정보는 학사정보, 취업정보, 학술정보, 공학인증, 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웹메일 사용자 정보, 웹디스크 사용자 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정보로 활용함

## 대학입학 전형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 금지  
※수시모집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군의 제한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 대학입학 전형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등록 확인(문서등록)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응할 수 없음(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수시모집 등록 확인(문서등록)을 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등록 확인(문서등록)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 포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요청은 우리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이중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 1 전형일정

구분	전형 일정		
원서접수	2024. 9. 9.(월) 9:00 ~ 9. 13.(금) 18:00		
전형서류제출	2024. 9. 9.(월) 9:00 ~ 10. 21.(월) 18:00		
선원건강진단서 제출(해사대학에 한함)	2024. 9. 9.(월) 9:00 ~ 10. 21.(월) 18:00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1단계 합격자	2024. 11. 21.(목)	
	실기	2024. 11. 28.(목)	
합격자 발표 및 온라인 문서등록 (개별통지하지 않음)	최 초	발 표	2024. 12. 13.(금)
		등 록	2024. 12. 16.(월) ~ 12. 18.(수)
	총 원	발 표	2024. 12. 19.(목) ~ 12. 26.(목)
		등 록	총원 합격자 발표할 때 공고 [수시 미등록총원 등록마감 2024. 12. 27.(금)]
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 2. 12.(수)		

- 1) 학생부성적우수자 전형 지원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전형서류제출 없음
- 2)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음

# 2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형유형(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체육 우수자	합계	
	학생 부 성 적 우 수 자	누 구 나	지 역 인 재	선 원 자 녀 및 선 원 경 력 자	사 회 적 배 려 대 상 자	농 어 촌 학 생	특 성 화 고 교 출 신 자	기 초 생 활 수 급 권 자 및 차 상 위 계 층 자	특 성 고 등 졸 업 한 재 직 자 (정 내)	특 성 고 등 졸 업 한 재 직 자 (정 외)			
해사 대학	항 해 학 부	43	10	10	6	5	5	3	3				85
	해 상 운 송 학 부	42	10	10	6	5	5	3	3				84
	항해정보시스템학부	29	8	8	4	3	3	3	2				60
	기관시스템공학부	43	10	10	5	5	5	3	3				84
	해양경찰학부	42	10	10	5	5	5	3	3				83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28	8	8	4	3	3	3	2				59
해군사관학부	남	17	4	2	-	-	-	-	2				25
	여	3	1	-	-	-	-	-					4
해양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15	5	5		3	2	2	3				35
	조선해양공학과	17	5	5		3	2	2	3				37
	환경·생명공학과	10	7	5		3	2	2	3				32
	해양건설공학과	16	5	5		3	2	2	3				36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	15	-		-	2	2	2			5	26	
해양산업융합학과									1	19		20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9	5	5		3	-	-	2				24	
합계	314	103	83	30	41	36	28	34	1	19	5	694	

- 1) 정원내 모집인원의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
-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전형 및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의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은 정원외 모집인원으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 3) 해양산업융합학과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정원내·외 모집인원으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 4) 전 모집 단위 남녀 구분하지 않고 모집(단, 해군사관학부 제외)

### 3

## 전형유형별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수능 최저학력기준

### 가. 학생부 성적 우수자[학생부교과]

지원 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어교과 및 수학교과를 각각 11단위 이상 이수한 자 ※ 외국고교에서 2학기(졸업자는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지원 불가		
제출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사 대학	항해학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1이내(탐구 영역은 2과목 평균 반영, 탐구 영역 1과목만 응시한 경우 탐구 영역 반영하지 않음, 소수점이하 절사)
해군사관학부			
해양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나. 누구나[학생부교과]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출 서류	국내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	
	국외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국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국외서류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	
	국외 고등학교 일부 과정 이수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졸업(예정)증명서 1부(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국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국외서류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사 대학	항해학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1이내(탐구 영역은 2과목 평균 반영, 탐구 영역 1과목만 응시한 경우 탐구 영역 반영하지 않음, 소수점이하 절사)
해군사관학부			
해양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다. 지역인재[학생부교과]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호남 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입학부터 졸업까지)한 자		
제 출 서 류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사 대학	항해학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2이내(탐구 영역은 2과목 평균 반영, 탐구 영역 1과목만 응시한 경우 탐구 영역 반영하지 않음, 소수점이하 절사)		
해군사관학부			
	해양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라. 선원자녀 및 선원경력자[학생부교과]

지원 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선원자녀] 선원법에 따른 선원(관공선 근무자 포함), 해군, 해양경찰로 승무경력증명서를 통한 순수 승선 일수가 3년(1095일) 이상의 승선경력(법정연가기간 미포함, 실습기간 제외)이 있는 자의 자녀 단, 선원법 제3조(적용범위) 제외 선박에 승선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선원경력자]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법정 연가기간을 포함한 승선경력자(승선실습기간 제외)(병역법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등)에 따른 현역 복무 완료자) ※ 외국고교에서 2학기(졸업자는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지원 불가	
제 출 서 류	선원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부모의 승선(승무)경력증명서 1부 ○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1부(승선 경력자가 의부(義父) 또는 의모(義母)일 경우에 한함)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 ※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군, 해양경찰, 관공선 근무자로 승선한 경력은 소속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승선(승무)경력증명서의 경력만 인정
	선원경력자	○ 지원자의 승선(승무)경력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 ※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군, 해양경찰, 관공선 근무자로 승선한 경력은 소속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승선(승무)경력증명서의 경력만 인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사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마. 사회적배려대상자[학생부교과]

지원 자격	<p>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자</li> <li>○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3년 이상 생활한 자</li> <li>○ 지방자치단체가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한 자</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재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은 해당 없음)</li> <li>○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부 또는 모의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3자녀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으로 인한 다자녀 가정은 해당 없음)</li> <li>○ 직업군인의 자녀로 20년 이상 재직 또는 복무한 자의 자녀(예비역 자녀 포함)</li> </ul> <p>※ 외국고교에서 2학기(졸업자는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지원 불가</p>		
제출 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li> </ul>	
	해당자	국가보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li> <li>※ 국가보훈처에서 발급</li> </ul>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1부</li> </ul>
		소년소녀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li> <li>※ 지원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증명서에 “위 학생은 소년소녀가정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 후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날인</li> </ul>
		가정위탁보호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li> <li>※ 시·군·구청에서 발급</li> </ul>
		다문화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표시) 1부</li> <li>○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li> <li>○ 부모 기본증명서 각각 1부</li> <li>○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외국인인 결혼이민자의 자녀만 제출)</li> </ul>
		다자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li> </ul>
		장기복무 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li> <li>○ 직업군인인 부 또는 모의 경력증명서 1부</li> <li>※ 최초 임관일 반드시 명기</li> </ul>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사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해양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바. 농어촌학생[학생부교과]

지원 자격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I [중·고교 전 과정(6년) 이수자]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b>도서·벽지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b></li> <li>○ 유형 II [초·중·고교 전 과정(12년) 이수자]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b>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I에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부모의 거주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일방이 사망, 실종, 장기여행, 중병, 심신상실, 수감 등의 사유로 친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는 다른 일방에게만 거주요건을 적용한다.</li> <li>▶ 혼인 취소 또는 이혼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는 「민법」 제909조의 친권자(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거나 알 수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한 자로 함)에게만 거주요건을 적용한다.</li> <li>▶ 부모 모두가 사망, 실종, 친권상실 등의 사유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는 부모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li> </ul> </li> <li>□ 유형 I에서 부모가 양부모일 경우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한 자로 한다.</li> </ul> </div> <p>■ 지원 자격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농어촌 지역 인정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면 포함). 다만,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li> <li>-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li> <li>-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는 제외됨</li> </ul> <p>[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 재학 및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li> <li>- 2개 이상의 초·중·고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농어촌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자격이 있음</li> <li>- 초·중·고교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등본상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된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격이 없음</li> <li>- 초·중·고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초·중·고교 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li> <li>-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초·중·고교 소재지가 동일한 농어촌지역이 아니어도 지원자격이 있음</li> </ul>
-------	---

	<p>- 소년·소녀 가장 가정의 학생이 농어촌 학생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도 동 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함</p> <p>-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p> <p>[재학 기간]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p>											
제출 서류	<p>유형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서식 1】</li> <li>○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각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시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li> <li>○ 부모 및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각각 1부(2024년 9월 1일 이후 발행된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li> <li>○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li> <li>○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에 한함)</li> <li>○ 부모에게 사고가 있는 자의 추가 제출서류</li> </ul> <table border="1" data-bbox="762 831 1465 145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유</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출 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상세) 1부(사망일자 표기)</li> <li>※ 2007년 이전 사망: 제적등본</li> <li>2008년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혼인 취소 또는 이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li> <li>-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친권자 기준)</li> <li>※ 증명서를 통해 친권자 지정 확인이 가능해야함</li> <li>- 양육권, 판결문 등 양육을 입증할 서류 1부(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등본 1부</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외의 대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기본증명서 1부</li> <li>- 해당 사유 증빙서류 1부</li> </ul> </td> </tr> </tbody> </table>	사유	제출 서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상세) 1부(사망일자 표기)</li> <li>※ 2007년 이전 사망: 제적등본</li> <li>2008년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li> </ul>	혼인 취소 또는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li> <li>-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친권자 기준)</li> <li>※ 증명서를 통해 친권자 지정 확인이 가능해야함</li> <li>- 양육권, 판결문 등 양육을 입증할 서류 1부(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등본 1부</li> </ul>	실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li> </ul>	위 외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기본증명서 1부</li> <li>- 해당 사유 증빙서류 1부</li> </ul>
		사유	제출 서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상세) 1부(사망일자 표기)</li> <li>※ 2007년 이전 사망: 제적등본</li> <li>2008년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li> </ul>											
혼인 취소 또는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li> <li>-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친권자 기준)</li> <li>※ 증명서를 통해 친권자 지정 확인이 가능해야함</li> <li>- 양육권, 판결문 등 양육을 입증할 서류 1부(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등본 1부</li> </ul>											
실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li> </ul>											
위 외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기본증명서 1부</li> <li>- 해당 사유 증빙서류 1부</li> </ul>											
<p>유형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서식 1】</li> <li>○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각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시에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li> <li>○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2024년 9월 1일 이후 발행된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li> </ul>											
<p>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p>	<p>해사대학 전 모집단위</p>	<p>최저학력기준 미적용</p>										
	<p>해양공과대학 전 모집단위</p>	<p>최저학력기준 미적용</p>										

사. 특성화고교출신자[학생부교과]

지원 자격	특성화 고등학교(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 모집단위별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기준학과의 아니더라도 특성화고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공통&gt;기준학과 및 전문교과 이수확인서 1부【서식 2】</li> <li>※ 기준학과 이수자 및 전문교과 이수 대상자 모두 제출 요함</li> <li>○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li> </ul>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사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해양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특성화고교출신자 전형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목록

모집단위		기준학과
해사 대학	항 해 학 부	재무·회계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유통과, 판매과,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자동차과, 화학공업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산업설비과, 조선과, 항공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기관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해양레저과, 수산양식과
	해 상 운 송 학 부	
	항 해 정보 시스템 학부	
	기 관 시스템 공 학 부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자동차과, 화학공업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산업설비과, 조선과, 항공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기관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해양레저과, 수산양식과
	해 양 경 찰 학 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해양 공과 대학	컴 퓨 터 공 학 과	정보컴퓨터과, 문화콘텐츠과, 디자인과,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자동차과, 화학공업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산업설비과, 조선과, 항공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기관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해양레저과, 재무·회계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유통과, 판매과
	조 선 해 양 공 학 과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자동차과, 화학공업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산업설비과, 조선과, 항공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기관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해양레저과
	환 경 · 생 명 공 학 과	농업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생명공학기술과, 환경공업과, 화학공업과, 동물자원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수산양식과, 해양생산과, 해양레저과, 환경보건과, 원예과
	해 양 건 설 공 학 과	디자인과, 토목과, 농업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자동차과, 화학공업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산업설비과, 조선과, 항공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기관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해양레저과, 산업안전과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해양레저과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시도교육청 제공,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정보 안내에 따라 동일계열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여부는 【서식 2】 기준학과 및 전문교과 확인서를 통해 심사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 ※ 동일계 심사 결과 기준학과에 해당되지 않거나, 전문교과 아닐 시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됨

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학생부교과]

지원 자격	<p>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li> </ul>		
제출 서류	공통	국내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
		국외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국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국외서류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
		국외 고등학교 일부 과정 이수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졸업(예정)증명서 1부(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국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국외서류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1부 ※ 지원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 가능
		차상위 계층자로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 확인서 등 해당하는 증명서 1부.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li> <li>○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li> </ul>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사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해양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학생부 교과]

지원 자격	<p>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 ※ 2025. 3. 1.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 후 재학기간에는 재직여부와 관계 없음</p> <p>※ 산업체 적용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li> <li>-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li> <li>- 4대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 자영업자 포함)</li> <li>-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인 허가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자격 인정</li> <li>- 4대사회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자격 인정(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li> </ul> <p>※ 재직기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기간은 제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 산정함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 2025. 3. 1.)</li> <li>-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각각의 경력을 연·월·일까지 계산함</li> <li>-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함</li> <li>-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li> <li>-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li> </ul>	
	일반고 졸업자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p>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p>
	특성화고 등 졸업자	<p>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li>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li> </ul>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자	<p>「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제출서류	공통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	
	해당자	산업체 재직자	○ 재직(경력)증명서 1부(경력사항 명시) ※ 2개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경우, 전/현 직장 재직(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경력기간 전체)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 복무확인서(현역) 및 병적증명서(전역) 1부(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4대사회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납세사실증명서 1부(경력기간 전체)
		4대사회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농업·수산업 등) 종사자	○ 국가·지자체가 발행한 공적 증명서* 1부(읍·면·동장 등 직인 날인 포함) ※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 지원자격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최종등록자 제출서류	최종 등록자 중 산업체 재직자	재직증명서 1부	2025. 3. 1.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
	최종 등록자 중 자영업자 등	국가·지자체가 발행한 공적 증명서 1부	※ 2025. 3. 14.(금)까지 제출 요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양산업융합학과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차. 체육우수자[실기/실적]

지원 자격	202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교재학 중 선발종목의 국가대표, 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 고교상비군으로 선발되었던 자 2) 고교재학 중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일부 대회 등)에서 2021년 3월 1일 이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3위 이내 입상자 ※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다만, 외국에서 1학기 이하 교육과정 이수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비동의자에 한함) ○ 체육우수자 심사원서 1부【서식 3】 ○ 선수 확인서(국가대표, 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 고교상비군 증명서) 1부 ○ 경기실적증명서 1부 ※ 대학체육회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스포츠 지원 포탈) 및 대회 주관 단체(기관)장 발행 ○ 지원자격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4

##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과학/사회	합계
해사대학	항해학부	20%	30%	30%	20%	100%
	해상운송학부	20%	20%	40%	20%	100%
	항해정보시스템학부	20%	30%	30%	20%	100%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10%	35%	35%	20%	100%
해군사관학부						
해양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20%	30%	30%	20%	100%
	조선해양공학과	20%	20%	30%	30%	100%
	환경·생명공학과	20%	20%	30%	30%	100%
	해양건설공학과	20%	30%	30%	20%	100%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30%	20%	20%	30%	100%
해양산업융합학과	20%	30%	30%	20%	100%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 계열구분 없이 과학교과 및 사회교과(역사 포함) 모두 반영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과목 중 9등급제(상대평가) 성적만 반영함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별 과목표(전문교과 과목 포함)

교과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국어	0243	고전	2688	실용국어	9402	문학 I	0000 0000 38	실용 국어
	0534	국어	3704	작문	A071	독서와 문법	0000 0000 39	심화 국어
	0535	국어 I	5629	화법	A520	화법과 작문	0000 0000 40	고전 읽기
	0536	국어 II	8401	매체언어	A660	실무 국어	0000 0001 74	문학과 매체
	0537	국어생활	8588	고전문학의 감상 과 비평	C655	통합국어 I	0000 0001 75	고전문학 감상
	1232	독서	8589	현대문학의 감상 과 비평	C656	통합국어 II	0000 0001 76	현대문학 감상
	1624	문법	8590	매체와 문학	0000 0000 05	국어	0000 0017 09	독서논술
	1632	문학	9398	화법과 작문 I	0000 0000 34	화법과 작문	0000 0016 06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
	1633	문학 II	9399	화법과 작문 II	0000 0000 35	독서	0000 0018 58	과제 탐구
	1634	문학개론	9400	독서와 문법 I	0000 0000 36	언어와 매체	0000 0033 28	국어 과제연구
	2149	생활국어	9401	독서와 문법 II	0000 0000 37	문학	0000 0025 37	독서와 문법

교과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수학	0229	고급수학	3323	이산수학	9519	미적분과 통계기 본 심화	C549	자연통합수학
	0381	공통수학	3451	일반수학	9802	심화수학Ⅱ	C557	확률및통계
	0972	기하	5534	해석	9910	고급수학 기본	D666	경영경제수학
	1650	미분과 적분	5668	확률과 통계	9934	응용수학	0000 0000 06	수학
	2075	상업수학	6515	실업수학Ⅱ	9941	수학연습 I	0000 0000 41	수학 I
	2153	생활수학	6819	미적분	9942	수학연습Ⅱ	0000 0000 42	수학Ⅱ
	2423	수학	8114	심화수학	A136	미적분학 I	0000 0000 43	미적분
	2424	수학10-가	8406	수학의 활용	A137	미적분학Ⅱ	0000 0000 44	확률과 통계
	2425	수학10-나	8407	미적분과 통계기 본	A492	수학연습 I	0000 0000 45	실용 수학
	2428	수학 I	8408	적분과 통계	A518	기초수학	0000 0000 46	기하
	2429	수학 I -A	8409	기하와 벡터	A521	미적분 I	0000 0000 47	경제 수학
	2430	수학 I -B	9154	수학 I 심화	A522	미적분Ⅱ	0000 0000 48	수학과제 탐구
	2433	수학Ⅱ	9311	심화수학 I	A526	고급수학 I	0000 0001 19	심화 수학 I
	2434	수학Ⅱ-A	9312	미적분과 통계 심화	A527	고급수학Ⅱ	0000 0001 20	심화 수학Ⅱ
	2435	수학Ⅱ-B	9313	기하와 벡터 심 화	A646	인문수학	0000 0001 21	고급 수학 I
	2438	수학Ⅲ	9314	수학Ⅱ심화	A647	자연수학	0000 0001 22	고급 수학Ⅱ
	2451	수학과 사고	9369	수학의 기본Ⅱ	B602	심화수학 I	0000 0016 18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
	2687	실업수학 I	9370	수학의 기본 I	C487	수학연습Ⅱ	0000 0036 68	수학적 사고와 적 분
	2691	실용수학	9518	수학 I 심화	C548	인문통합수학	0000 0033 24	수학 과제연구
	0000 0036 67	수학적 사고와 통계	0000 0037 87	통합수학 I	0000 0037 88	통합수학Ⅱ	0000 0043 40	기본 수학
0000 0044 83	인공지능 수학	0000 0040 81	실용 통계					
영어	0230	고급실무영어	2964	영어독해 I	8420	영어독해와 작 문	0000 0000 49	영어 회화
	0231	고급영어회화	2965	영어독해Ⅱ	8421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0000 0000 50	영어 I
	0235	고등영어	2966	영어듣기	8603	심화영어	0000 0000 51	영어 독해와 작 문
	0382	공통영어	2967	영어듣기연습	8604	영어권문화 I	0000 0000 52	영어Ⅱ

교과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2154	생활영어	2968	영어문법	8605	영어권문화II	0000 0000 53	실용 영어
	2671	실무영어	2969	영어문법 I	9629	영어의 기본 I	0000 0000 54	영어권 문화
	2692	실용영어	2970	영어문법II	9630	영어의 기본II	0000 0000 55	진로 영어
	2918	영미문학	2971	영어문화	A519	기초영어	0000 0000 56	영미 문학 읽기
	2919	영미문화 I	2972	영어작문	A523	실용영어 I	0000 0001 98	심화 영어 회화 I
	2920	영미문화II	2973	영어작문 I	A524	실용영어II	0000 0001 99	심화 영어 회화 II
	2948	영어	2974	영어작문II	A525	실용영어독해와 작문	0000 0002 00	심화 영어 I
	2949	영어10-a	2977	영어청해	A528	심화영어회화 I	0000 0002 01	심화 영어II
	2950	영어10-b	2978	영어회화	A529	심화영어회화II	0000 0002 02	심화 영어 독해 I
	2951	영어 I	2979	영어회화 I	A530	심화영어독해 I	0000 0002 03	심화 영어 독해 II
	2952	영어II	2980	영어회화II	A531	심화영어독해II	0000 0002 04	심화 영어 작문 I
	2959	영어강독	7365	교양영어	A532	심화영어작문	0000 0002 05	심화 영어 작문 II
	2960	영어권문화	7877	실용영어회화	A684	금융영어	0000 0010 29	퍼블릭스피킹과 프리젠테이션
	2963	영어독해	8419	심화영어회화	0000 0000 14	영어	0000 0043 39	기본 영어
과학	0226	고급물리	2142	생활과 과학	9307	심화지구과학	0000 0000 70	화학 I
	0227	고급생물	2145	생활과학	9308	심화생명과학	0000 0000 71	생명과학 I
	0233	고급지구과학	4090	전자과학	9309	심화화학	0000 0000 72	지구과학 I
	0234	고급화학	4268	정보과학	9310	심화물리	0000 0000 73	물리학II
	0375	공통과학	4703	지구과학	9345	과학융합	0000 0000 74	화학II
	0403	과학	4704	지구과학 I	A090	일반물리학 I	0000 0000 75	생명과학II
	0404	과학 I	4705	지구과학II	A094	일반물리학II	0000 0000 76	지구과학II
	0405	과학II	4706	지구과학실험	A105	일반화학 I	0000 0000 77	과학사
	0408	과학사	5577	현대과학과 기술	A106	일반화학II	0000 0000 78	생활과 과학
	0413	과학철학	5639	화학	A127	일반지구과학 I	0000 0000 79	융합과학

교과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1644	물리	5640	화학 I	A129	일반지구과학II	0000 0001 23	고급 물리학
	1645	물리 I	5641	화학II	A537	과학사 및 과학 철학	0000 0001 24	고급 화학
	1646	물리II	5662	화학실험	A783	일반생물과학 I	0000 0001 25	고급 생물과학
	1647	물리실험	5677	환경과학	A784	일반생물과학II	0000 0001 26	고급 지구과학
	2104	생물	7352	화학과제연구 I	A809	융합과학	0000 0001 27	물리학 실험
	2105	생물 I	7354	물리과제연구 I	A821	물리학 I	0000 0001 28	화학 실험
	2106	생물II	7603	생물과학	A822	물리학II	0000 0001 29	생물과학 실험
	2111	생물과학기초실습	8410	생물과학I	A829	화학실험 I	0000 0001 30	지구과학 실험
	2112	생물과학선택실습	8411	생물과학II	B780	생명 과학 I 의 이해	0000 0001 31	정보과학
	2113	생물과학실습 I	8549	생물과학실험	B996	물리실험 I	0000 0001 32	융합과학 탐구
	2114	생물과학실습II	8550	정보과학 I	C428	생명과학 과제연구	0000 0001 33	과학과제 연구
	2115	생물과학전공실습	8551	정보과학II	0000 0000 09	과학	0000 0001 34	생태와 환경
	2116	생물실험	8552	고급생물과학	0000 0000 32	통합과학	0000 0009 35	과학융합
	2117	생물응용기초실습	8671	생물과학I	0000 0000 33	과학탐구실험	0000 0033 23	물리 과제연구
	2118	생물응용선택실습	8672	생물과학II	0000 0000 69	물리학 I	0000 0033 27	지구과학 과제연구
	0000 0006 20	인간과 환경	0000 0033 26	생명과학 과제연구				
사회	0210	경제	3446	일반사회	8634	국제경제 I	0000 0000 63	사회·문화
	0212	경제지리	4359	정치	8635	국제경제II	0000 0000 66	여행지리
	0377	공통사회	4360	정치경제	8636	세계문제	0000 0000 67	사회문제 탐구
	0519	국사	4709	지리	8637	비교문화 I	0000 0002 54	국제 정치
	0543	국제경제	4710	지리 I	8638	비교문화II	0000 0002 55	국제 경제
	0545	국제법	4711	지리II	9403	법과정치	0000 0002 56	국제법
	0550	국제정치	4721	지역과 사회	9404	한국사	0000 0002 57	지역 이해
	0554	국토지리	4722	지역과 역사	A073	사회문화	0000 0002 58	한국 사회의 이해

교과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코드	과목명
	1821	법과사회	4731	지역이해	A533	국제관계와국제기구	0000 0002 59	비교 문화
	1905	비교문화	5153	통합사회 I	A534	사회과학방법론	0000 0002 60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1980	사회	5402	한국근·현대사	A535	한국의 사회와 문화	0000 0002 61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1981	사회 I	5419	한국의 전통문화	B071	사회문제 탐구	0000 0002 62	현대 세계의 변화
	1982	사회 II	5422	한국지리	0000 0000 07	사회	0000 0002 63	사회 탐구 방법
	1984	사회·문화	5964	국제문제	0000 0000 30	한국사	0000 0002 64	사회 과제 연구
	1988	사회탐구	5965	한국의 현대사회	0000 0000 31	통합사회	0000 0002 67	기업과 경영
	2315	세계사	6846	시사토론	0000 0000 57	한국지리	0000 0014 19	거시경제학
	2317	세계지리	8403	한국문화사	0000 0000 58	세계지리	0000 0014 35	민주시민(고)
	2842	역사	8404	세계역사의 이해	0000 0000 59	세계사	0000 0014 36	세계시민(고)
	3343	인간사회와 환경	8405	동아시아사	0000 0000 60	동아시아사	0000 0017 36	한국근·현대사
	3348	인류의 미래사회	8632	국제정치 I	0000 0000 61	경제	0000 0031 70	경제과제연구
	3349	인문지리	8633	국제정치 II	0000 0000 62	정치와 법	0000 0031 73	정치와 법과제연구

## 5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 분	교과성적 학년별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요소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출결성적		
				반영비율	최저점	최고점	반영비율	최저점	최고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00%			90%	0	900	10%	0	10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등 (누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전형에 한함)	100%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없는 자)			100%	0	1,000	-	-	-

## 6 성적산출 방법

### 가. 교과 성적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 원칙

- 우리 대학에서 정한 반영 교과군에서 지원자가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 교과성적 산출은 이수단위 및 학기별 과목의 석차등급을 활용
- 전 학년에 반영교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 해당 교과는 9등급 처리(과학과 사회는 동일 교과로 봄)
- 학기별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학년별 석차등급을 학기별 석차등급으로 간주하여 반영
-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는 2개 학년에서 이수한 반영교과로 산출
- 교과 성적은 3학년 1학기(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으로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1) 고등학교졸업(예정)자

- 교과 성적=Σ[교과점수×교과 반영 비율]

- 교과점수=900×[1- $\frac{(\text{교과 등급 평균}-1)}{8}$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교과등급평균= $\frac{\sum(\text{과목 석차등급} \times \text{단위수})}{\sum \text{단위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07년 이전 졸업자의 석차등급 산출
  - 석차 백분율 =  $[\frac{\text{석차} + (\text{동석차 수} - 1)/2}{\text{이수자수}}] \times 100$
  - 석차 백분율에 따른 석차등급

석 차 백분율	4% 이내	4%초과 11%이내	11%초과 23%이내	23%초과 40%이내	40%초과 60%이내	60%초과 77%이내	77%초과 89%이내	89%초과 96%이내	96% 초과
석차 등급	1	2	3	4	5	6	7	8	9

####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교과 성적=Σ[교과점수×교과 반영 비율]

- 교과점수=1,000×[1- $\frac{(\text{교과 등급 평균}-1)}{8}$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검정고시 출신자 과목별 시험 성적에 따른 교과등급

성적	97이상	95~96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5미만
교과 등급	1	2	3	4	5	6	7	8	9

#### 3) 국외 고등학교 또는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체계에 따라 정규 고등학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산출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성적의 체계가 정규 고등학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산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 방법을 정한다.

나. 출석 성적

1) 졸업예정자

$$\text{출석성적} = 100 \times (1 - \text{결석일수}/100)$$

2) 졸업자

$$\text{출석성적} = 100 \times (1 - \text{결석일수}/120)$$

- 3학년 1학기까지(졸업생은 전 학년)의 출결 상황으로 산출
- 사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반영
- 지각, 조퇴, 결과가 3회이면 결석 1일로 계산하고, 2회 이하는 계산하지 않음
- 결석일수가 100일(졸업자는 120일)을 초과한 경우 100일(졸업자는 120일)로 계산
- 출석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해양산업융합학과 지원자 중 기존 방식 성적 반영이 불가한 평어 취득 성적은 취득 점수 및 평어별로 아래 석차등급을 부여하여 교과별 평균 등급을 산출 후, 학부(과)별 교과별 반영비율에 따라 교과성적을 산출한다.

평어	수	우	미	양	가
취득점수	100	90	80	70	65
석차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7등급	9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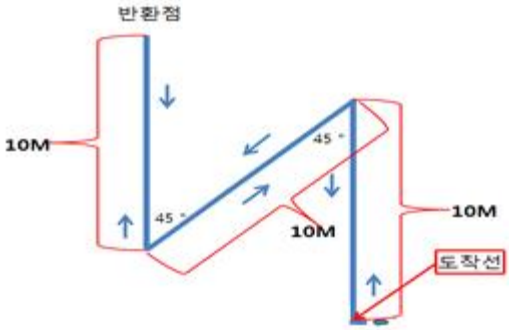
## 7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전형방법 및 반영비율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학생부교과

전형단계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합계
1단계(5배수)	100%	-	-
2단계	1단계 성적(60%)	40%	100%
전형성적	600	400	1,000

[실기고사 종목]

구분	실기종목	배점	실시방법
기초실기	Zigzag Run	50%(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선에 서서 측정위원의 출발 신호에 맞추어 출발한다.</li> <li>- 10m 거리마다 있는 꼭지점을 돌아 반환점에 도착후 다시 출발선까지 돌아온다.</li> <li>- 출발 이후 도착선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배점을 산정한다.</li> </ul>
	제자리멀리뛰기	50%(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양발을 벌려 서서 준비자세를 취한다.</li> <li>- 양발을 지면에 붙인 상태에서 다리를 굴러 출발한다.</li> <li>- 뛸 거리는 발구름 선에서 가장 마지막에 착지한 발뒤꿈치까지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li> <li>- 멀리뛰기 착지 후 엉덩이나 손을 짚을 경우 해당위치로 측정한다.</li> </ul>

[실기고사 배점표]

종목		점수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Zigzag Run	남	14.40 이내	14.41~14.60	14.61~14.80	14.81~15.00	15.01~15.20	15.21~15.40	15.41~15.60	15.61~15.80	15.81~16.00
Zigzag Run	여	15.80 이내	15.81~16.00	16.01~16.20	16.21~16.40	16.41~16.60	16.61~16.80	16.81~17.00	17.01~17.20	17.21~17.40	17.41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남	278 이상	277~275	274~272	271~269	268~266	265~263	262~260	259~257	256~254	253 이하	
	여	228 이상	227~225	224~222	221~219	218~216	215~213	212~210	209~207	206~204	203 이하	



▣ 실기/실적(체육우수자)

선발종목	조정(Crew)	카누	카약	합계
일괄합산	3명	1명	1명	5명

전형단계	입상실적	학교생활기록부	실기	합계
일괄합산	50%	30%	20%	100%
전형성적	500	300	200	1,000

- 1) 입상실적 점수부여 방법 : 각종대회 입상자는 출전대회 중 1개 대회에 한하여 대회의 비중 및 순위 등에 따라 우리대학교가 정한 기준에 의거 점수를 부여함
  - 2021~2023년도 국가대표 등의 경력자인 경우 : [표 1]에 의거하여 가장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 시에는 [표 3]에 의거하여 가장 유리한 1개 대회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2021년 3월 1일 이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의 경우 : [표 2]에 의거하여 가장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 시에는 [표 3]에 의거하여 가장 유리한 1개 대회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2) 실기평가 방법 : 우리 대학교의 전형일정에 실시하며, 조정/카누/카약 에르고미터로[표 4]에 의거하여 평가함.

[목포해양대학교 인정 각종 대회]

종목	대회명
조정	- 전국체육대회 - 전국조정선수권대회 - 충주탄금호배전국조정대회 - 대통령기 시·도대항조정대회 -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 -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카누/카약	- 전국체육대회 - 전국카누선수권대회 -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표 1]

경력	국가대표			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 고교상비군			
	2021	2022	2023~	훈련소집 2회 이상			훈련소집 2회 미만 (2021 ~ 2023)
				2021	2022	2023~	
점수	340	380	420	300	340	380	300

[표 2]

출전참가팀수 (개인포함)	5팀 이상									5팀 미만 (2021~2023 중 1위 ~ 3위)
	2021			2022			2023~			
	성적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점수	280	240	200	320	280	240	360	320	280	200

[표 3]

입상년도		2021			2022			2023~		
성적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점수	국내	50	40	30	60	50	40	70	60	50
	국제	60	50	40	70	60	50	80	70	60

[표 4]

종목		점수				
		200	180	160	140	120
조정 에르고 미터 (2,000m)	남	6'20" 이하	6'21" ~ 6'30"	6'31" ~ 6'40"	6'41" ~ 6'50"	6'51"이상
	여	7'20" 이하	7'21" ~ 7'30"	7'31" ~ 7'40"	7'41" ~ 7'50"	7'51"이상
카누/카약 에르고 미터 (500m)	카누(남)	1'50" 이하	1'51" ~ 2'00"	2'01" ~ 2'10"	2'11" ~ 2'20"	2'21"이상
	카약(남)	1'40" 이하	1'41" ~ 1'50"	1'51" ~ 2'00"	2'01" ~ 2'10"	2'11"이상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교과성적 학년별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요소					
			교과성적			출결성적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비율	최저점	최고점	반영비율	최저점	최고점
100%(학년구분 없음)			90%	0	540	10%	0	60
			90%	0	270	10%	0	30

다. 교과목 반영 비율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30	20	20	30

- 1) 과학교과, 사회교과(역사 포함)를 모두 반영
- 2)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과목 중 9등급제(상대평가) 성적만 반영

**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근절 및 조치사항 반영(총점을 기준으로 감점 부여)**  
 - 1~3호: 3% 감점, 4~5호: 5% 감점, 6~7호: 7% 감점, 8~9호: 10% 감점

## 8 선발 방법

가. 최초 합격자 선발

1) 해사대학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모집단위: 선원건강검진에 합격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모집단위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만큼 최초 합격자를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예비합격 후보자로 한다.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모집단위: 선원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중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모집단위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만큼 최초 합격자를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예비합격 후보자로 한다.

2) 해양공과대학, 해양산업융합학과, 첨단해양모빌리티학과

전형 성적순으로 모집단위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만큼 최초 합격자를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예비합격 후보자로 한다.

나. 충원 합격자 선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 합격선의 동점자 처리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정원외 모집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전형 및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의 농어촌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 전형의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예비합격 후보자로 처리한다.

## 9 해사대학 선원건강검진

가. 대상: 해사대학 지원자

나. 건강검진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  
(※우리 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입학공지 참조)

다. 건강진단서(국외/원양용, 특수건강검진 사항 포함한 원본)

【서식 4】 제출기간: 2024. 9. 9.(월) 09:00 ~ 10. 21.(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합격기준: 【별표 1】에 따름

마. 건강검진 시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검진 수수료, 건강진단서 【서식 4】 및 건강검진 판정기준표 【별표 1】

바. 건강검진 결과는 합격, 불합격 판정 자료로만 활용

사. 건강진단서가 제출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아. 검사 의사명 및 서명 란에는 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자. 발급 의료기관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차. 건강진단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카. 다수의 전형으로 해사대학 모집단위에 지원한 경우 건강진단서 1부 제출 가능

예시)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 항해학부와 지역인재전형 해상운송학부에 지원한 경우 건강진단서 1부 제출 가능

타. 진단서 제출 시 상단에 우리 대학 수험번호를 직접 기재하여야 함(다수의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 모두 기재)

## 10 피복측정

가. 대상: 해사대학 온라인 등록[등록 확인서(문서 등록)] 완료자 및 등록금 납부 완료자

나. 일자: 2025년 2월 중(추후 공고)

다. 장소: 우리 대학이 지정한 장소(추후 공고)

## 11 등록금 납부

### 가. 온라인 등록: 등록확인서(문서 등록)

※ 등록예치금은 납부하지 않음

1) 등록 기간

- 최초합격자: 2024. 12. 16.(월) ~ 12. 18.(수)
- 충원합격자: 충원합격자 발표 시 공고

2) 등록 방법

-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로그인](#) → [합격 확인](#) → [온라인 등록에서 등록버튼 클릭](#) → [등록확인서 출력보관](#)

※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온라인 등록 안내 사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나. 등록금 납부

1) 납부 기간: 2025. 2. 10.(월) ~ 2. 12.(수)

2) 납부 방법: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 입금(가상계좌 이체)

※ 가상계좌는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 가능

3) 납부 금액: 등록금 총액

### 다. 등록 유의사항

- 1) 합격자는 온라인 등록[등록 확인서(문서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금 납부기간에 최종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다른 알림이나 조치 없이 합격을 취소한다.
- 2) 우리 대학과 입학 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이중등록 할 수 없다.
- 3)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대학 및 타 대학에서 실시하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4) 합격자를 발표할 때 우리 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록 및 입학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한다.

## 12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가. 우리 대학에 합격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한 경우, 합격 통보를 받은 즉시 등록을 원하지 않은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우리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우리 대학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우리 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등록포기서 등 제출 문의: ☎ (061) 240 - 7022

라. 등록금 환불을 우리 대학 입학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마. 등록금 환불은 신청 당일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서식 1]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성 명		수 험 번 호			
모 집 단 위 (지원학부(과))		주 민 등 록 번 호	-		
지 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전과정 이수자(학생 본인 재학사실 및 거주사실 작성) <input type="checkbox"/> 중·고등학교 과정(학생 본인 재학사실 및 부모, 학생 모두 거주사실 작성)				
출 신 고 교	년 월 일 년 월 일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예정)			
재 학 사 실	학 교 명	소 재 지		재학 또는 거주 기간	
	초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초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거 주 사 실	부(父) 성명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모(母) 성명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학생 성명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 년 월
위 학생을 귀 대학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20    년    월    일                      _____ 고 등 학 교 장 (직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귀하</b> </div>					

【서식 2】

## 기준학과 및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

수험번호		모집단위 (지원학부(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자		담임	
출신고교	고교교육과정			구분
	학교명	출신학과	기준학과	
				<input type="checkbox"/> 기준학과 출신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교과 이수자
전문교과 확인	교과목명	단위수	교과목명	단위수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계	
※기준학과 출신자가 아닌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이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이며, 귀 대학의 상기 지원 모집단위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OO고등학교장 [직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체육우수자 심사원서					
성명	(한글)	(한자)		사진 (3cm × 4cm)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출신고교	고등학교	졸업년도	20 . 월 (졸업자·졸업예정자)	특기종목	
대회입상실적	대회년월일		대회명	경기실적(입상 등)	주최기관
	2021				
	2022				
	2023~				
	※ 기타 사항(기량 및 경력 등)				
본인은 2025학년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체육우수자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OO고등학교장 [직인]					
<b>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귀하</b>					

※ 별첨 : 선수확인서 ( )부 및 경기실적증명서 ( )부





[서식 5]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원서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수험번호

모집단위														사진 (3cm X 4cm)			
전형유형																	
지원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고교코드													출신고교 전화번호			
지원자구분																	
지원주소	우편번호					주소											
전형기간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본인 자택전화							
	추가 연락처1									추가 연락처2							
전형 료 환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직접방문 수령 <input type="checkbox"/> 수험생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본인은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제공 동의
- (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1】**

**건강검진 판정기준표**

검사항목	판정기준			
1. 시 력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해군사관학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2. 체 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3. 질 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4. 청 력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해군사관학부	두 귀 모두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5. 색 각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건강진단서 색각란에 색약이 표기되면 불합격 처리됨)			
6.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			
7.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8. 혈 당	공복 시 125 mg/dl 이하일 것			
9. 간 장	SGOT: 50 IU/L 이하일 것, SGPT: 45 IU/L이하일 것			
10. C.B.C(빈혈)	[정상기준치]			
	R.B.C	4.2 ~ 6.3	M.C.H	26.0 ~ 33.0
	H.G.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M.C.H.C	32.0 ~ 37.0
	H.C.T	36.0 ~ 52.0	W.B.C	4.0 ~ 10.0
	M.C.V	79.0 ~ 96.0		
11. R.P.R(V.D.R) (매독반응)				
12. 소변검사				
13. 기 타	사시, 안면홍터, 토순(免脣), 언어장애 등이 심하지 않은 자			

- ▶ 검진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 ▶ 색각 판정에서 색약 등의 이상이 표기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를 사용하여 정상 표기가 되어야 한다.